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긴급복지지원	3
긴급지원	3
지원대상자	3
지원기준	3
소득기준	3
재산기준	3
신청방법 및 지원절차	3
지원내용	4

기초생활수급	긴급복지지원	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	의료급여
지역자활센터 	자원봉사센터	푸드뱅크	


긴급지원

긴급지원이란?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자

주 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, 중한 질병 또는 부상,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,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, 화재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지원기준

⊙ 소득기준

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1,458,609	2,445,063	3,146,025	3,840,810	4,518,386	5,180,253	5,835,444

*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(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)

⊙ 재산기준
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금액(만원)	241	152	130

*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

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- 신청방법: 보건복지부: 보건복지콜센터 '희망의 전화 129'(국번없이) /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, 읍·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
- 지원절차: 지원요청·신고⇒현장확인·선지원⇒사후조사⇒적정성심사⇒사후연계

지원내용

종류	지원내용	지원기간
생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▪ 생계지원 수준(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원) 	3개월
의료지원	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(300만 원 범위)	1회
주거지원	임시거소 제공 곤란한 경우 주거 소요비용 지급	3개월
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	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비용 지급	
그 밖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절기(10~3월)연료비: 98,000원 / 월 ▪ 해산비(70만원), 장제비(80만원), 전기요금(50만원 이내) : 각 1회 	1회 (연료비3회)
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▪ 초(22.1만원), 중(35.2만원), 고(43.2만원) 	1회

GANGJIN

Web Contents

